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기간 연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요 내용

#### 1. 개정 사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과세물품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

#### 2. 개정 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 하는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함

현행	개정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II. 의견제출

### 1. 제출기한

2021년 11월 29일 - 2021년 12월 9일

### 2. 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환경에너지세세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에 제출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9호)

## | Contact



김찬란 관세사

T 02-6011-3026  
E clkim@esein.co.kr



조민지 팀장

T 02-6011-3098  
E mjcho@esein.co.kr

#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